

제 호

(앞쪽)

인력훈련통지서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훈련기간	년 월 일부터 (일간)	직종별	자격·면허번호
	년 월 일까지		자격·면허명
사용기관		사용기관 소재지	
출석장소		출석일시	년 월 일
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력훈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중앙행정기관의 장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지방행정기관의 장

직인

< 질 취 선 >

제 호

인력훈련통지서 수령증

인력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훈련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수령자	성명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	주소		본인과의 관계	
수령일시			수령장소	

인력훈련통지서

(안내 사항)

1. 훈련대상자는 이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.
2. 훈련대상자의 부재 시 통지서를 받은 가족 또는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.
3. 이 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때에는 인력훈련통지서, 주민등록증, 국가기술자격면허수첩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.
4. 이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1. 이 수령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2. 통지서 교부권자는 이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